

자연채무와 예물의 소권

보시기에 딱딱한 법적 사실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참고 보아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필자 나름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자연채무(自然債務, *obligatio naturalis*)라는 법률용어가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채권자는 소권(訴權,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의 권능)이 없는 채무를 말합니다. 이 경우 “소권이 없다”는 것은 채무자의 이행을 소로서 청구할 수 없음을 뜻하는데, 보다 쉽게 이야기하면 ‘책임 없는 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용어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시각에서 말입니다.

올바른 이해를 위해 여기에 교회사건(서울지법 민사합의 2000가합5867) 하나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독자의 편의를 위해 가급적 쉽게 써내려갈 테니 눈여겨 보아주셨으면 합니다.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당시 예배당 신축(新築)을 계획하고 교회신도들에게 이를 위한 헌금약정(獻金約定)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A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 소유의 집을 판 돈과 매월 일정금액(30-100만원)을 합친 총 10억원을 교회신축을 위해 현금할 것을 교회의 대표자 B에게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불어 닥친 금융위기로 A의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A는 약정한 기일 내에 현금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교회 내에서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에 A는 건디다 못해 현금을 못 내겠다고 선언하고 급기야 교회를 박차고 나가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접한 B는 관할법원에 A를 상대로 “현금하기로 약정한 교회 신축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약정금 반환소송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들 각자의 주장을 판결문에서 낱낱이 볼 수는 없지만, 필자생각에 A는 “현금 약정은 B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B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인 바에야 자신에게 어떤 이유에서든 약정현금을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을 것이고, 이에 반하여 B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교회를 상대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응당 약정현금을 내야한다”고 주장했을 것이라 봅니다.

이 사건을 접하신 독자제위가 만약에 법관이라면 어떻게 판결하셨겠습니까? 아니 그 보다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다면 어떻게 판결하셨겠습니까? A가 그릇행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B의 처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을 놓고 A와 B 저마다의 권리를 생각해 보면 “약정현금을 내야 된다” 또는 “내지 않아도 된다” 등의 지엽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예상할 수 있는 2가지 문제가 뒤따라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A에게 법적으로 약정현금을 내게 할 수 있는 강제력[소구력(訴求

力)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이 사건의 원인을 뒤바꿔서 만약 약속대로 A가 현금을 교회에 납부한 이후 금융위기를 사유로 A가 B에게 이미 납부한 현금을 반환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그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하여 법원은 신도가 신앙심으로 교회에 현금할 것을 약정한 경우 신도의 현금약정에 따른 의무는 자연채무에 불과하다고 보아, 이 사건에서 신도의 자의적인 현금납부가 없는 경우 법률적으로 지급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렇다면 A는 자신이 약정한 현금을 B에게 내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됩니다. 결국 B는 기대와는 달리 씹쓸한 패소(敗訴)의 맛을 보아야 했습니다.

발생하지도 않은 문제였지만 법원은 친절하게도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분쟁에 대비하여 두 번째 문제에 대한 판시를 첫 번째에 덧붙여 두었습니다. 곧 법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가 현금약정을 이미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금전이 이미 교회에 귀속되었다 할 것으로 신도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덧붙여 두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건의 판결요지는, 약정현금은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내지 않으면 법으로 강제할 수 없고(첫 번째), 이에 반하여 당사자가 약정현금을 이미 교회에 납부했다면 당사자는 이를 다시 반환해 달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으로(두 번째)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첫 번째에 해당하는 법리가 책임 없는 채무로서 앞서 이야기했던 자연채무가 됩니다.

참고로,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사건 및 이 책에서의 모든 사건은 필자가 임의대로 지어낸 허구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바로 보여 지고

있는 말 그대도 혀를 끌끌 찰 수밖에 없는 씁쓸하기 그지없는 현실입니다. 지금 이를 접하신 독자제위의 마음에서 일고 있는 심상(心想)은 어떠하신가요? 이왕지사 허물어진 마음이라면 이하 한 술 더 떠 보기로 하겠습니다.

헌금과 관련하여 현재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신앙적인 문제 중에서 아마 십일조만큼이나 찬반(贊反)에 대하여 뜨겁게 쟁점화 되고 있는 이슈는 찾아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십일조를 드리고 있는 신실한 크리스천은 예외라 할 수 있겠지만, 필자의 편협한 생각으로 보기에 아마도 대부분은 이 같은 십일조에 관한 찬반 이슈에 적잖이 곤혹스러워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찬반론자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저마다의 해박한 지식과 성경구절 등을 죄다 동원해 가며, 이러쿵저러쿵 각자의 주장을 피력하고 있음을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듣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문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해결의 실마리는커녕 그 단초조차 찾지 못할 논쟁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 지면에서까지 찬반의 명분이나 주장하는 바의 근거를 시시콜콜히 따져 보는 것은 그다지 유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강에 돌 하나 던진다고 해서 수위가 높아질 요량이라면 모를 일이지만 여하튼 무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핵심만은 명백히 되짚어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필자 또한 우리 모두의 신앙을 보다 깊은 데로 이끌기 위한 처방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십일조는 교회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헌금 중에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그러고 보면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교회의 입장에서는 대개 십일조를 바쳐야 한다는 입장에 서있을 것이고, 달리

십일조를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바치는 자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십일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논리의 편에 서있을 것이 통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예물’(禮物)과 ‘재물’(財物)에 대한 명확한 인식입니다. 두 말할 필요 없이 십일조는 삼척동자가 보기에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일 것임에 분명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할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더욱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 십일조를 드리지 말라는 기록이 있다면 또 모를 일이지만 드려야 한다는 기록이 존재하고 있는 한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문제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구약 레위기에 화목제[和陸祭, Peace Offering, *Shelamin*, שְׁלָמִין, 때로는 구제제(救濟祭), 감사제(感謝祭), 수은제(酬恩祭), 낙헌제(樂獻祭)라고도 합니다]의 하나로서(레 03) 낙헌제(樂獻祭, Free-will Offering, *Nedabah*, נֶדָבָה)라는 것이 있습니다(레 21-24). 낙헌제에 관한 제사의 형식과 절차는 차치하더라도 낙헌제는 지금의 ‘감사헌금’으로 명목을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 십일조와는 달리 감사헌금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에서도 찬반의 주장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이 십일조만 문제 삼고 있는 것일까요? 액수가 감사헌금에 비하여 많다는 것이 이유일까요? 아니면 부담 때문일까요? 필자가 보기에 이유는 이들 문제에서 비롯된 또 다른 이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곧 한편에서는 애써 거두려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애써 내지 않으려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보기에 십일조고 무엇이고 간에 가만히 놔두어 알아서 할 수

있게끔 했어야 함에도, 굳이 박박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급기야 지금처럼의 찬반논리에 휩싸이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애써 거두려고’ 하기에 봉헌자의 입장에서는 짜증나고 신경질 나는 것이며, ‘애써 내지 않으려고’ 하기에 피봉헌자의 입장에서는 짜증나고 신경질 나는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필자의 이야기에는 실로 엄청나고도 심각한 문제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구약성경 레위기의 기록을 들추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십분의 일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십분의 일은 여호와와 것이니 여호와와 성물이라”(레 27:30)

‘십일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기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반론자들은 주인은 가만히 계신데, 마치 그들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지 않은가하는 생각이 그것입니다. 따지고 보세요.

십일조는 주인인 채권자로서 하나님과, 드려야 하는 채무자로서 우리의 일입니다. 이것은 채권자 되신 하나님과 채무자 된 우리가 결정하여야 할 문제임을 의미합니다. 앞서 본 세상의 판결 또한 이를 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도 아닌 사람(교회 또는 교회지도자)들이 왜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왜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필자는 도대체 영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깜빡하고

모르고 있을 수도 있기에 가르치고자 그것도 노파심에서 한두 번도 아니게 그렇게 목이 터져라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필자가 보기에, 설령 찬반론자의 주장에 빗대어 각기 주장하는 바가 아무리 옳다손 치더라도 신앙의 척도까지 간섭하여 마구잡이로 재단하고자 든다면, 이는 엄청난 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십일조를 드리는 마음 또한 다름없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고백이라고 보아 마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곧 십일조는 우리의 지식과 판단으로 우리 스스로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심어주신 선물이자 감사의 결과로 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하고도 귀한 신앙을 상(床)위에 올려놓고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서로가 다투고 있다면,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고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추상같은 사실로서 십일조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바치게 하신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바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보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정하셔서 거두어 가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일조를 바치지 않은 것은 우리 자신이 결정한 셈’이 됩니다. 그것이 ‘죄’라면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레위기의 기록 또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바치겠다고 서원한 것’으로 보아 마땅할 것입니다.

레위기가 지금의 우리에게 똑똑히 전하고 있는 핵심은 모든 희생제물로 부터의 대가는 ‘죄 사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희생제물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줄 테니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악한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께 바친

바 된 것임은 두 말할 필요 없는 사실이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보았듯이 제사가 먼저였던 것이 아니라 죄가 먼저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사랑이 먼저였던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애초 그들의 죄 사함을 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치라고 요구하신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천부당만부당(千不當萬不當)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두는 죄 사함의 방법을 몰라 헤매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딱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특단의 배려로서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율법과 규례가 이로부터 비롯되었음은 추상같은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앞선 화제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하여 십일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만약 무엇이 부족하였다면 레위기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일조를 바치지 않아도 된다고 스스로를 정당화하지 말고, 먼저 마음의 중심을 헤아려 볼 것입니다. 십일조를 바쳐야 된다고 선불리 남에게 주장하지 말고, 그간에 자신이 바친 십일조에 문제는 없었는지 그 또한 헤아려 볼 것입니다.

바로보기에, 번제 · 소제 · 화목제 · 속죄제 · 속건제 어떠한 제사에서도 대제사장이나 누구를 포함하여 희생제물을 강요하거나 다그쳐 억압한

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죄는 저들에게 고스란히 돌리셨을 뿐입니다.

십일조는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禮物)입니다. 온전한 마음에 정성을 담아 드리는 가히 귀하고도 값진 희생제물인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십일조는 하나님께 바치는 재물(財物)이 아닙니다. 그 재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진바 되어 재물에 상응하는 축복으로서 되갚아 주시는 그런 대가(對價)로서의 재물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던 이야기로서 십일조를 드리면 30배, 60배, 100배 아니 그 몇 배로 축복을 받는다고요? 지금은 구약이 아니기 때문에 십일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요? 모두가 예물을 재물로 보고, 보다 정확히는 ‘돈’으로 보고 말하고 있는 작태로 보아 그간 이러한 생각에 괴로워하고 있었던 필자 또한 우리 모두 속죄제에 임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차 거론하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지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어떠한 것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도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닐 것입니다.

누구는(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외아들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음에도, 이로써 덕본 죽을 수밖에 없었던 미물보다도 못한 천한 자들이 어느 존전(尊前)이라고 “내야 된다”고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알량한 꾀변을 늘어놓고 있는가 말입니다.

레위기(레위기 1:1-17)에 비추어, 번제단 위에서 불태워지거나 피를 흘려야 했던 희생제물은 본래 소도 양도 염소도 나아가 비둘기도 아니었습니다.

곧이곧대로라면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였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대신한 것이지 결단코 그들이 우리는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보혈의 공로를 되갚을 요량이면, 우리의 생명을 바쳐도 속량할 수 없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면케 해주신 하나님 앞에서 다음 달에 바칠 십일조를 걱정하고 있거나, 따지고 있다면, 이를 어찌 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십일조든 감사헌금이든 구제 헌금이든지 간에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것이라고 이르신 예수님의 말씀은(마 19:24), 부자라서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인 양 따지고 계산하고 있는, 곧 예물을 돈(재물)으로 보고 있는 자들에게 이르신 추상같은 말씀으로 바로 새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예물은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마음과도 같이 엄숙하고도 경건하게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의 판결과 같이 십일조는 책임 없는 채무로서 자연채무가 아니라, 말 그대로 마땅한 채무가 되는 셈입니다. 이를 증할 수 있는 레위기의 마지막 기록을 이 글의 결론으로 대신해 둡니다.

“그리고 그 땅의 십분의 일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십분의 일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십일조를 무르려면 그것에 오분의 일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십일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 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와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레 27:30-34)